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Q. 일반적으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합니다. 만약 한 승강장에 일반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를 같이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승강기검사기준」별표 1의 「16.2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일반용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와 동일한 구조로 설치한다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실, 전기실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시야가 확보된 강당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완화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2항 제1호~제7호에 방화구획 완화조건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품의 제조 · 가공 ·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 ·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 · 강당 · 스카이라운지 ·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충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따라서 문의하신 전기실 및 기계실의 면적이 3,000m²를 초과(10층 이하이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하여 면적별 방화구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 건축법령상 명시하고 있는 완화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공동주택 전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시험기준이 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되는 시험기준이나 검정기술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주택 전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시험기준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의 구분에 따라 주거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합니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3호(2012. 2. 9),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면 “주거형 스프링클러헤드란 주거지역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 · 방수량 및 실수 분포를 갖는 헤드(간이형 스프링클러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2009. 8. 24),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미국] UL 193, UL Standard for Safety for Alarm Valves for Fire-Protection Service.